

2026년 6월 26일부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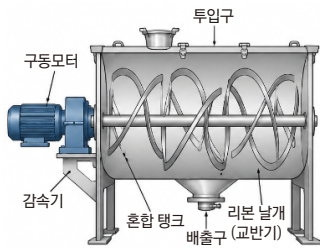
혼합기, 파쇄기·분쇄기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

안전검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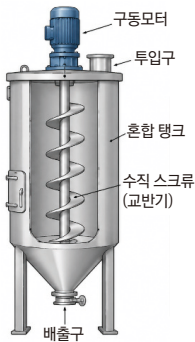
혼합기

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 주거나 섞어주는 것

수평형 혼합기



수직형 혼합기


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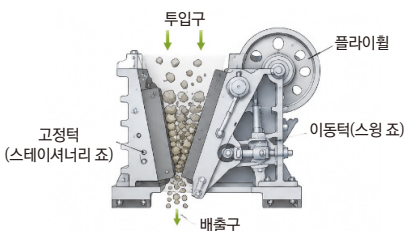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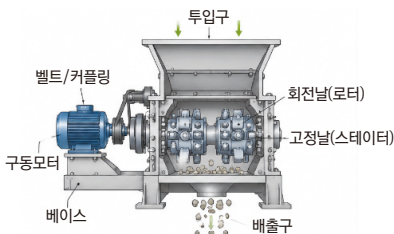
1. 용기회전형 혼합기
2. 기류교반형 혼합기
3. 구동 모터 용량이 1.2킬로와트 이하인 것
4. 산업용 혼합기의 내용적이 200리터 미만인 것
5. 식품용 혼합기 중 구동축이 수직형으로 사용되는 것
6.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·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
7. 상·하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
8. 상·하수 처리 설비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물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
9.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
10. 압력용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거나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

※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

파쇄기·분쇄기

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 도구가 달린 회전 장치 또는 왕복운동 기구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부수는 것

파쇄기(크러셔) 구조



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1. 시간당 파쇄·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
2. 구동 모터 용량이 7.5킬로와트 미만인 것
3. 회전 장치, 왕복운동 기구 없이 사용되는 것
4. 채소, 육류, 어류 등의 식품을 파쇄·분쇄 하는 것
5. 이동식 목재 파쇄·분쇄기, 차량탑재형 세단기
6.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·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
7. 상·하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
8.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거나 사무용 문서 세단기로 사용되는 것
9.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

※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

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

- ① 2013.3.1.이전 설치된 설비 2026.6.26.~2026.12.25.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- ② 2013.3.1.~2023.6.26.까지 설치된 설비 2026.6.26.~2027.6.25.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- ③ 2023.6.27.~2026.6.25.까지 설치된 설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
안전검사 수수료

안전검사 대상 기계		수수료
혼합기	5kw 미만	44,000원
	20kw 미만	48,000원
	50kw 미만	51,000원
	50kw 이상	53,000원
파쇄기 및 분쇄기	5kw 미만	46,000원
	20kw 미만	53,000원
	50kw 미만	55,000원
	50kw 이상	63,000원

안전검사기관 및 홈페이지

기관명	홈페이지(문의처)
대한산업안전협회	http://www.safety.or.kr (02-851-6452)
한국안전기술협회	http://www.korsta.or.kr (1577-7514)
한국승강기안전공단	http://www.koelsa.or.kr (1566-1277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http://portal.kosha.or.kr (1544-3089)

안전검사 업무처리 절차

	안전검사 신청 사업주	안전검사 실시 검사기관	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검사기관
법적근거	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		
제도소개	혼합기와 파쇄기·분쇄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		
과태료	(법 제175조제4항제3호)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	